

수신 : 외부손사 대표/실무자

송신 : 삼성화재손사 전략운영파트 김제헌 선임

손해사정 업무관련 당부사항

담당	당	장	업	원	대	표
Sw		X				

1. 배경

- 최근 금감원 외부손사와 보험회사間 업무 실태 점검

2. 문제점

- 금감원 지적 사항

- 합의서 징구 등 손해사정 위탁업무 범위 外 합의서 징구 행위
- 손해사정법인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사정업무 범위 內 위탁 업무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. 보험회사가 합의서를 징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시정 요구.

※ 「보험업법」 제188조(손해사정사 등의 업무)

- ①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②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 적정여부 판단
- ③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

※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(업무위탁) 3항

3. 당부 사항

- 외부손사는 피해자(또는 수리업체)間 손해사정액 합의시 동의서(합의서) 징구 禁止 요청

※ 피해자(또는 수리업체)의 손해사정액 반복 방지를 위한 외부손사 자발적 합의서 징구도 자제요청

- 以上 -